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 1 장 총칙

제 정 2019.12.31

-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공공데이터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며, 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계획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시행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데이터" 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
 - 2. "데이터베이스(DB)" 란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를 통해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 3. "전자화된 파일(File)" 이란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다.
 - 4. 데이터 목록(데이터셋) 이란 관리하고 있는 원천데이터 내 유사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목록이라 한다
 -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 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 한다.
 - 6.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 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한 수준을 말한다.
 - 8.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9. "공공데이터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란 개별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말한다.
 - 10. "공공데이터 제공부서"란 공공데이터 담당부서의 데이터를 총괄관리하고 이용자들에

게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제 2 장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 제 4 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등 지정) 사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 1.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공공데이터 제공담당부서장
 - 2.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해당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실무담당자
- 제 5 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등 역할)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업무와 다른 정책 및 업무 등과의 연계 · 조정
 - 2.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3.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
 - 4. 그 밖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
 - 가.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및 변경내역 통보(별지1)
 - 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홈페이지 관리
 -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연간 시행계획 수립
 - 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정부기관 통보(별지8)
 - 마.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별지2)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별지4)
 - 2. 공공데이터 제공
 -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상 작성 및 관리(별지7)
 - 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 제공에 관한 관리(별지9~15)
 - 3. 사후관리 및 폐기
 -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 나. 제공대상 목록 변경(별지3) · 제외(별지5) 처리
 -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별지6)
 -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 수검

제 3 장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

- 제 6 조 (공공데이터 제공 단계)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효율적인 제공정책 시행을 위한 관리 단계를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사후관리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관리기준 및 원칙을 준수한다
- 제7조 (1단계: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공공데이터의 신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할 경우의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여부 확인,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등을 시행하는 단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대상 여부 확인
 - 1.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하려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 2. 해당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공공데이터 관리지 침 및 제반 법규를 적용하여 생성·수집·관리 한다.
 - ② 1차 확인: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 1. 데이터의 생성·수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 2.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공이 불가하다.
 - 3. 단,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2차 확인 : 저작권 및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 1. 비공개 대상 정보의 확인을 완료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2. 제공대상 데이터가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정보가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제공대상 데이터 중 일부의 저작권이 외부인 및 타기관 등에 있는 경우, 권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제공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4. 외주 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구축 시 용역수행사(또는 개인)에게 "저작권 및 기 타 권리 양도 확인서"(별지16)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제 8 조 (2단계 : 공공데이터 처리·운영) 신규생성·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포맷)로 생성·정비 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구축·운영하는 단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형태(포맷) 고려
 - 1.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포맷)의 경우,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포맷)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생성·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 제공기반 구축

- 1.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에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해당 정보를 분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신규로 데이터를 생성.취득(DB, 시스템 구축 등) 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방식(파일 다운로드, 오픈API 등), 공공데이터포털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③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수립
- 1. 제공대상인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개방을 위한 제공방법(기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공공데이터가 세분화되어 수집·관리되고 있거나, 가공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세분화된 형태로 등록하여 개방
- 제 9 조 (3단계 :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제공대상인 공공데이터의 목록, 파일 등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유지·관리하는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기한 「공공데이터법」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및 변경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변경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등록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포맷)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생성・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선정 및 등록
 - 1. 「공공데이터법」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인 공공데이터 를 선별하여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 등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기관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조사에 따른 누락 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 3. 공공데이터 제공담당자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목록을 사외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목록의 유지관리는 공공데이터 제공담당자가 관련법령 및 배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공공데이터포털 내 관리자페이지의 등록관리 메뉴 등을 이용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제 10 조 4단계(공공데이터 제공)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또는 공표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다음 항과 같다
 -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 1. 「공공데이터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여 접수 및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단, 제공방법은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 2. 제공요청 데이터가 현재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로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공데이터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② 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의 제공
- 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요 청은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활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이첩을 받아야 하다.
- 2. 이첩 받은 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 신청 처리는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의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신청인에게 통보 후 기한만료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 제공방법, 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 터포털 및 활용지원센터에 처리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등 록하여야 하다.
- 4.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 및 활용지원센터에 처리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 11 조 (5단계 :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 제공 후 특정 사유 발생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및 제공 중단, 이용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을 시행하는 단계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의 심사를 거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를 생성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공공데이터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법」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기관 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법」제29조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목록 제외된 경우 「공공데이터법」제5조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제공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4 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제 12 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3 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수립) ① 전체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단계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의 품질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인력을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 2. 데이터베이스 품질목표 정의
 - 3. 중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대상 선정
 - 4.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개선 계획
 - 5.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
 - 6. 연계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 7.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14 조 (공공데이터 구축단계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7조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준수하여 신규로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고, 구축 중·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일관된 데이터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5 조 (공공데이터 운영단계 관리)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품질 진단에 따른 오류 식별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관리 한다
 - ① 품질진단 및 개선을 수행하기위한 품질기준과 자체적인 품질진단 및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 ② 데이터베이스별 중요 마스터 테이블, 개방데이터 여부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진단·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 ③ 데이터베이스별 수립한 품질 기준에 따른 품질 진단을 주기적 수행하여 오류 데이터 식별 및 그 원인 파악 등 품질진단을 수행한다
 - ④ 품질 진단 결과 식별된 오류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오류 개선을 위한 정제 활동을 추진한다
- 제 16 조 (공공데이터 활용단계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포털 및 외부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접수로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일자별 신고 접수된 내역과 처리 결과 기록관리 및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공데이터 인프라, 개방, 활용, 오류신고 조치 등 공공데이터 전반에 대한 실태 평가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요구 마감일(마감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 17 조 (공공데이터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민간(개인·기업 또는 단체)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기관이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하다.
 - ②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복·유사 서비스의 발견 시 해당서비스를 개선·중단·폐기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데이터법」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12.3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한국가스기술공사**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 변경[])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 변경[] 통보서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에당 기원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실무담당자 1							
	성명		부서명					
공공데이터제공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2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	행)	접수	처리과명-일	<u> </u> 실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호() 팩스번	호()	/ 기	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 방법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무담당자 작성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④ 보유 근거(법령)				
⑤ 키워드(3개)				
⑥ 공공데이터 설명				
① 제공대상 여부	제공 []		부분제공 []	
① 제중대상 어구	미제공 [] 미제공 사유: (미제공 근거 법률: ()	
⑧ 향후 제공	향후 제공 [] 향후 제공 연도: (향후 제공 사유: ())	
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예 [] 아니오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 1. "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③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항목은 아래의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중 중분류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3. "⑧ 향후 제공"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경찰		관광		국정운영	
	법무및검찰		문화예술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안전관리	문화체육관광	문화재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인진관리 		문화체육관광일반		정부자원관리	
	해양경비		체육		지방행정 • 재정지 원	
	과학기술연구		건강보험		산업단지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보건	보건의료	지역개발	수자원	
	기술개발		식품의약품안전		지역및도시	
	고등교육		공적연금			
	고증파귝		기초생활보장		우정	
	교육일반		고용노동	통신		
			노인ㆍ청소년		방송통신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	유아및초 • 중등교 육	12.70	보육・가족및여성			
			보훈	통일 · 외교	외교	
			사회복지일반		통일	
	평생 • 직업교육		주택			
			취약계층지원		_	
	병무행정		통상		대기	
			무역및투자유치		-117 [
	방위력개선		산업・중소기업일 반		상하수도・수질	
국방	병력운영	산업・통상・중소 기업	산업금융지원	환경보호	자연	
	국방일반행정		산업기술지원		폐기물	
	전력유지		산업진흥 • 고도화		해양환경	
			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보호일반	
	농업 • 농촌		도로			
농림해양수산	01 01		도시철도			
	임업ㆍ산촌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국회	국회	
01-1012		-02="	철도		1-1	
	해양수산 • 어촌		항공 • 공항			
	에ઠ푸란·이슨 		해운·항만 5)-10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기관명 주소(소재지) 성명 부서명 공공데이터제공 신청기관 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부서명 공공데이터제공 실무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변경 전 변경사항 변경 후 변경사유

한 국 가 스 기 술 공 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항목에는 당초 제출한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과 똑같이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합니다.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명칭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설명						
③ 공공저작물 여부	예[] c	바니오 []				
④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3자 권리 포함 유무	제3자 권리(소유권 등) 미 <u>:</u>		제3자 이용허락 등 [포함 [] 등 권리 미확보 []
⑤ 이용허락범위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는 저작자표시-동 사유:([] [] 형허락 []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나	-비영리-변	[] 년경금지 [] 전 변경허락[]
⑥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⑦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차기 등록 예정일			년	월 일		
⑧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	무료 []			유료 [](원)
⑨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건 [] (부과단위: 금액(용량 [] 과단위:) 넘()	이용기간 (부과단위: 금액(기타 [] 부과기준, 단위 등이 포함된 자료 별도제출 금액()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	나운로드 [기관자	체에서 다운	으로드 []
① 제공대상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전자기록미	배체 저장 저	공 []		드 오픈데0 년계파일등록	
		오픈데이터 URL등록 [
① 제공대상 제공데이터/위치(URL)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	텍스트 []	동영상 []] 지미0] 설1[]	기타	· [] (유형:)
⑪ 매체 유형별 건수	유형: () 건수: () 대표확장자명: ()					
⑤ 언어						
⑪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바니오 []				
⑰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공공데이터 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l)을 따른 데이E	터입니까? 여	[] 아니오[]
⑱ 기타 이용 유의사항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대표자 성명 기관명 해당 기관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부서명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외 요청 사유

한 국 가 스 기 술 공 사 사 장

지이

기안자 직위	(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반	[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	이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u>r</u> ()	/ 기안자	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6호서식]

㈜**한국가스기술공사**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 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중단을 통보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중단[] 통보서						
=UCF 212F	기관명		대표자 성명				
해당 기관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							
변경 • 중단							
예정 일시							
제공	변경・중단 내용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중단 내용							
및 사유	변경 • 중단 사유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9	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フ	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백상지 80a/m²(재확용포)]

[별지 제7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이용 요청	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	항				
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요청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제공 여부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경우만 작성)	제공일	제공방식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 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요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3. "제공 여부"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 4.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 5.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6. "제공방식"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 7. "비고"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구분		년 상반기[]	• 하반기 []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에 6 기근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 현황	총 요청건수	건	총 제공건수	건					
※ 첨부서류: 「공	공데이터의 제공 :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구	구칙」 별지 제7호	선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디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지	사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항)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	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호() 팩스번호	2()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	소	/ 공개구분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소재지)		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	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명칭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귀하

자르는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 국 가 스 기 술 공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저스시하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사항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각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	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	<u> </u>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Ē()	/ 기안자의	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 결정내용	제공 []	부분제공 []		당 사유:)			
~~~ 20~~~ 		누군셍[ ] (부분제공		공 내용: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제공 장소				
게이 크게 ᄎ 이터	제공 방법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제공 비용		무료 [ ]		유료 [	] (	원)		
^110 -10		T-11 [ ]	ш[]		, 부과단	단위: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부서명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	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	경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5	별일련번호	호(시행일	실)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열린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u> </u>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 위에는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수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	성명	부서명	
제공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작성 방법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수 신 (신청인)

####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이용자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제공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세6 경제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데이터	성명		부서명					
제공책임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단체명 및		E자 성명)		생년월일				
통보인	주소(소지	[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	হ		전자우편주소				
제공중단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 중단일				
내용	제공중단 사유와 경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 첨부서류:	제공중단사유 형	해소 및 그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				
「공공데0	터의 제공 달	빚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험	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공	공데이터 제공		
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3	도치사항·	을 통보합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b>기 관 의 장</b> 귀하								
자 르 는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통보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통보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인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자				처리기간 즉	<b>۱</b>		
	성명	7 T   J.				생년월일			
신청인	(단세당 및 대표	자 성명)				사업자(법인·단체)			
	주소(소지	지)				등록번호			
	전화번	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기관	기관명	ļ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트	세공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지	성명				실무담당자 부서명			
	공공데이트	세공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건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데이터	명칭								
H TI O TI DI	내용	г 1	-11 - 1 - 1 H		1 +11 7 *				
분쟁 유형 및	분쟁 유형		제공거부	-	] 제공중	5년 			
처분일 제공거부 및	처분일		<u>년</u>	월	일				
제당기구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	* 별도의 용지	[에 적어	첨부할 수	≎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I 제공 및 0	용 활성	  화에 관합	 한 법률」	제31.	 조제1항에 따라 공	공데여	)     터 자	 네공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공공데이터제:	공분쟁조정역	익워회	위워장	귀하					
				자 르 는	선 ==				
				접 수 경	5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٨)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	·  와 같이 접수되	디었습니다	ł.						
						Έ	<u> </u>	월	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